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해외환경규제동향

 2005
11

Monthly Newsletter VOL. 15

'해외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CONTENTS

헤드라인

1 EU, 자동차 형식승인 요건에 재활용·재생성 기준 추가

해외동향

- 2
- 1 중국판 RoHS 법안 WTO TBT위원회에 통보
 - 1 프랑스, 합성수지 봉투 사용금지 추진
 - 1 일본-유럽 표준화기구간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 1 유럽의회, 환경위 제출 '불소화가스 규제 강화안' 부결
 - 1 일본 자동차 메이커, 차량 실내공기질 이슈 마케팅 전략화
 - 1 미국 EPA, 주택 에너지스타 기준 강화
 - 1 독일, 내년부터 차량에 'PM10 배출등급 표시' 부착 의무화
 - 1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 매장에서 생분해성 식품 포장용기 사용하기로
 - 1 일본, 지구온난화 대응키 위해 백색 LED 조명 개발사업 적극 추진

새 간행물

6 영국 DTI에서 RoHS 안내서 발간

주요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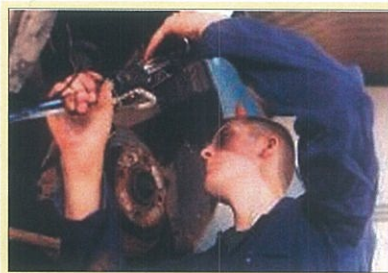
- 7
- 1 EU, RoHS 지침 부속서 잇달아 개정
 - 1 캘리포니아주, 화장품안전법 제정
 - 1 EU, 소음규제 2단계 대상에서 일부 옥외장비 제외 추진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EU, 자동차 형식승인 요건에 재활용·재생성 기준 추가



자동차 형식승인 심사기준에 부품 및 재료의 재활용·재생 가능률 기준을 포함하는 지침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동차 형식승인 지침인 70/156/EEC를 개정하게 될 이 지침(안) [COM (2004) 162 final]은 폐자동차처리지침(ELV)에서 규정하는 폐차 재활용 및 재생률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됐다. 이 지침의 핵심은 차량 형식승인 요건에 재활용·재생 가능률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신차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성·재생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현재 매년 800만~900만톤 정도 발생하는 EU 역내 자동차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침이 채택되면, 채택 후 3년 뒤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신차는 규정된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률(85% 이상)과 재사용 및 재생 가능률 기준(95% 이상)을 만족해야만 형식승인을 받고, 유럽 내 판매가 가능하다. 자동차 생산자는 차량 형식승인 심사시 ISO 22628: 2002 (Road Vehicles -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 Calculation Method)에 따라 산정한 자동차 부품 및 재료의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이 규정된 기준에 만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이 지침(안)에 따르면, 재활용 및 재생 가능률 계산시 다른 자동차 제조사 재사용할 경우 도로안전이나 환경에 유해영향을 줄 수 있는 에어백, 소음기(exhaust silencers) 등 일부 부품은 재사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들 부품은 재활용 및 재생가능률 계산시 재사용가능 부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승용차, 스테이션 왜건 등 차량분류 M1과 경량트럭 등 차량분류 N1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앰블런스 등 특수 용도 차량과 회원국별 연간 생산량이 500대 미만인 차량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EU 집행위



중국판 RoHS 법안 WTO TBT위원회에 통보

중국 정보산업부가 지난 9월 28일, 일명 중국판 RoHS 법안으로 불리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을 WTO TBT위원회에 통보했다. 중국 정보산업부는 중국 내에서 RoHS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이다. 통보된 법안은 애초의 중국 RoHS 초안과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중 관련 산업계에 대한 영향이 큰 주요 규정 시행일자 수정과 대상제품의 사전인증 규정이 추가됐다.

WTO TBT에 통보한 법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이며, 이는 유해물질 제한 및 사전인증 의무화 규정을 제외한 법안 내 모든 규정의 시행일자다. 따라서, 유해물질 함량표시, 제품안전 사용기간, 회수 등과 관련한 라벨링 등이 이때부터 의무화된다. 반면, EU RoHS와 동일한 시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제품 내 납, 수은 등 특정 유해물질 제한규정의 경우, 이번 WTO에 통보한 법안에서는 적용대상 제품군 리스트를 규정하게 될 별도의 전자정보제품오염 우선관리목록(Catalogue)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목록은 1차 적용대상 제품군 목록과 사용제한 유해물질 목록 및 사용제한 시행일자를 규정하게 되며, 시장 현황 및 기술개발 수준 등에 따라 매년 개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제한은 법초안에서 규정한 2006년 7월보다 훨씬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산업부의 예측에 따르면 대략 2007년 7월쯤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WTO에 통보한 법안에서는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 국가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국 RoHS 적용대상 제품에 대한 사전인증(pre-market certification)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시장 판매 전에 강제인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인증 담당기관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산하기관으로 중국 강제인증제도(CCC)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될 전망이다.

통보된 법안은 11월 27일까지 WTO 회원국의 회람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통보문에서 정보산업부는 법 공표예정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밝혔다. 이는 중국측이 예상하는 공표일로 실제 이 시점에 공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올 연말 또는 내년 1/4분기 안에 공표될 전망이다. 법안은 최종 공표될 때까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제품 라벨링 규정과 세부 적용품목 목록, 그리고 사전인증과 관련한 규정 등 관련 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중국 정보산업부, WTO



프랑스, 합성수지 봉투 사용금지 추진



프랑스 의회가 2010년부터 생분해 안 되는 합성수지 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을 승인했다. 올

2월에 최초 제안된 이 법안은 농업분야 기본법 개정의 일부로써, 10월 말쯤 정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전분을 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봉투사용을 촉진하게 될 이 법률은 EU의 농업정책에서 생산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프랑스 농민들에게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 조치가 환경보전 효과뿐만 아니라 생분해성 봉투의 원료 생산 증가로 농업부문을 활성화

연결될 것으로 프랑스 환경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유럽 플라스틱 제조자 단체인 PlasticsEurope은 이 개정법률을 두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시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의회가 경솔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PlasticsEurope과 르몽드지를 비롯한 몇몇 미디어에 따르면 모든 합성수지 포장재가 이 법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모든 합성수지 포장재가 사용금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2월에 제안된 최초 법안에 따르면 합성수지 봉투만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 관계자도 합성수지 포장재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종 채택되는 법률의 해당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출처 | 프랑스 의회, PlasticsEurope 등



일본-유럽 표준화기구간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 EN 규격제정에 일본측 의견 제출할 수 있게 돼 -

일본 공업표준조사회(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는 10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전기전자분야 유럽지역 표준화 기관인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와 표준화 활동에 관한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조인했다. 이 양해각서는 쌍방의 표준화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인적교류 촉진과 기술위원회에 상호 참가, 정기적인 정보교류 회의개최 등을 통한 포괄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CENELEC이 채택하는 전기전자분야 유럽규격(EN 규격)의 상당수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유해물질 제한지침(RoHS)과, 전자파적합성지침(EMC) 등 유럽법규의 기술기

준으로 채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국제전기표준회의(IEC)와의 협정에 의해 국제규격으로 채용되는 등 표준화 분야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ENELEC의 동향은 관련 산업계의 중대관심사로 작용해 왔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금까지 EU 회원국 또는 유럽지역 회원기관 이외에는 참가 불가능했던 CENELEC의 각 표준화 회의에 일본측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CENELEC에서 마련하는 규격 초안에 대한 일본의 의견제출도 가능해져서, 앞으로 유럽 표준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전기전자제품 업계의 대응이 훨씬 쉬워질것이라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망했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JISC



유럽의회, 환경위 제출 '불소화가스 규제강화안' 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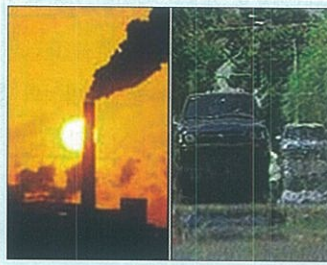
유럽의회환경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 통과시킨 불소화가스 규제강화 수정안이 유럽의회 전체회의의 표결에서 대부분 부결됐다. 이러한 결정은 보다 강력한 불소화가스 사용제품 규제를 시도한 의회환경위의 결정에서 후퇴한 것으로, 의회 환경위 및 환경단체의 격분을 사고 있다.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등 불소화가스는 오존층파괴물질 대체제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지구온난화 영향이 매우 커서 교토의정서에서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소화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집행위는 2003년 해당 물질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화, 용도 제한 등을 규정하는 규칙(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당초 집행위는 단일 규칙으로 제안했으나, 각료이사회가 작년 10월 해당 법안을 자동차용과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제로 분리해 별도의 2개 법안으로 수정했다.

환경위의 규제강화 수정안은 주로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제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먼저, 불소화가스의 누출방지에 초점을 맞춘 집행위 및 이사회(안)과 달리 제품 내 해당물질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시장단일화'

및 '환경보전'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법제정 근거를 '환경보전'으로 단일화했다. 법제정 근거가 '환경보전'인 경우, 각 회원국은 보다 강화된 규정 또는 별도의 규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전체회의의 표결에서 의회는 비자동차용 불소화가스 규제규칙의 법제정 근거를 이사회가 제안한대로 '시장단일화' 및 '환경보전'으로 이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라벨링과 특정용도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과 관련해 각 회원국은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의회는 불소화가스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수정사항들에 대해서도 부결시켰다.



관련업계로부터 커다란 비용부담을 수반하게 될 결정이라며 강력한 반발을 샀던 위원회의 결정을 유럽의회가 대부분 부결시킴으로써, 이번에는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번 의회 표결결과에 대한 이사회 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최종 법안 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출처 | 유럽의회, Euractive 등



→ 일본 자동차 메이커, 차량 실내공기질 이슈 마케팅 전략화

도요타를 포함한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관련업계 최초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량 실내공기질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유해물질 배출이 낮은 내장재를 사용하기로 했다.

도요타 대변인은 “일본의 관련업계는 차량 실내공기질을 보건문제와 연관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개선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차 냄새는 대부분 차량 내장에 사용된 접착제, 도료, 비닐 및 플라스틱 내장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때문이며, 이들 물질은 두통이나 인후염, 구토, 어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차량 내 해당 물질 농도와외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청(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이 2001년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비록 신차 구입 후 약 6개월 뒤쯤이면 냄새가 사라지기는 하나, 차량 실내의 VOCs 농도는 주택이나 사무실 실내 안전기준치 보다 몇 배 이상 높다.

CSIRO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낮은 자동차 내장재 사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올해 초,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설정한 주택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7년까지 스티리렌 및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13종의 VOCs에 대해 차량 실내농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차량 실내 VOCs 농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 기업들의 개선노력은 최초로 정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만족시키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일본의 상위 5대 자동차 메이커(도요타, 닛산, 혼다, 미쯔비시, 마즈다)는 이미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VOCs 수준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차량 실내공기질을 자동차관련 보건 이슈의 하나로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향후 미국, 유럽 등의 경쟁사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Environment News Network



미국 EPA, 주택 에너지스타 기준 강화

주택에 대한 에너지스타 요건이 강화됐다. 미국 EPA는 지난 9월 28일 주택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현저히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스타 요건 개정을 발표했다. 에너지효율 요건을 높인 이 개정으로 향후 20년간 20억 달러 이상 일반가정의 냉·난방비 절약 효과(7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해당)가 기대된다고 EPA는 밝혔다.

개정된 요건에 따르면, 새 주택은 일반 주택에 대한 단열요건보다 더 엄격한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창문도 에너지스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해당 지역 기후를 고려한 냉·난방기 크기요건을 규정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기기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최소 5개 이상의 에너지스타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의 에너지코드(energy

code) 개정과, 에너지부가 시행중인 Building America Program의 주택에너지효율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요건은 2007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즉, 2007년 이후 주택의 에너지스타 라벨 획득을 위해서는 새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개별 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에너지효율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주택의 경우 올해 말까지 기존 요건에 따라 에너지스타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7년 7월까지 적용 예외가 허용된 주택의 경우도 기존 요건에 따라 심사 받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에너지스타는 EPA가 에너지부(DOE)와 함께 시행중인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4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았다.

출처 | 미국 EPA,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 에너지코드 -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 최소요건을 규정한 법. 설계자와 건축업자가 에너지이용을 줄이고 에너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권고



독일, 내년부터 차량에 'PM10 배출등급 표시' 부착 의무화

독일 상원이 승용차 및 트럭을 대상으로 입자상물질(PM10) 배출량에 따른 등급표지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법령에 따라 차량을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당 표지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이 조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디젤차량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의 운행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된다.

이 등급표지제도에 따라 PM10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모든 휘발유차량과 Euro 4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량에는 초록표지가 부착된다. Euro 2 또는 3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량에는 흰색표지를 그리고, PM10 배출 기준이 가장 느슨한 Euro 1에 해당하는 배출수준을 보이는 디젤차량은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다. 대상차량에는 기준 만족을 위해 입자상물

질저감장치(particle filter)를 설치할 수 있다.

PM10 배출이 가장 많은 등급인 라벨 부착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운행을 일정기간 금지시킬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EU의 대기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도시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독일 환경청과 환경단체들은 초록표지 부착 차량의 기준을 2010년경부터 적용하게 될 Euro 5 수준으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독일 화물운송협회(BGL, German Hauliers Association)는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교통제한조치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독일 환경부, BGL 등

PM10 배출	표지	대상차량
고	없음(부착 못함)	Euro 1 기준에 해당하는 디젤차량
중	흰색	Euro 2 또는 3 기준에 해당하는 디젤차량
저	초록	휘발유차량, Euro 4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량

→ 대형 유통체인 월마트, 매장에서 생분해성 식품 포장용기 사용하기로

미국계 대형 유통체인인 월마트가 매장 내 식품 포장에 사용되는 기존 석유계 합성수지 용기를 옥수수전분을 사용해 만든 생분해성 수지용기로 교체·사용하기로 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지속가능 포장재 컨퍼런스(10.17~19)'에 참석한 월마트의 Kistler 이사에 따르면, 1단계로 11월 1일부터 과일, 야채 등의 포장에 생분해성 받침접시나 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약 1억 1,400만개의 합성수지 포장용기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사용해 생분해성을 지닌 친환경 포장용기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매장에서 사용하는 합성수지 포장용기를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용기로 대체할 경우, 연간 80만 갤런에 해당하는 휘발유 절감효과 및 1,100만 파운드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월마트측은 말했다. 이 회사는 향후 매장에서 포장용기뿐만 아니라 명절 등 기념일에 판매하는 선물카드와 전화카드도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한 제품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형유통체인의 생분해성 포장재 사

용 움직임은 최근 치솟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월마트측은 기존 포장재 가격과 비교할 때 생분해성 포장용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옥수수전분을 사용한 포장재가 석유계 포장재보다 가격 변동이 적어 장기적으로는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포장용기에 대해서는 생분해성 수지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합성수지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함께, 유동적인 유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이러한 비용부담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Philadelphia Daily News 등





▶ 영국 DTI에서 RoHS 안내서 발간



영국 무역산업부(DTI)가 영국시장에서 판매될 전기 및 전자기기 내 특정 유해 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적용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부 안내서(Government Guidance Notes)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지난 8월에 수정·보완한 것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및 브롬계 난연제(PBB, PBDE)를 허용치 이상 함유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시장유통을 제한하는 RoHS 지침의 영국 내 적용과 관련해 각 규정 해석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적용대상 제품의 범위, 예외규정, 적합성 증명방법 및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s)의 정의 등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까지 RoHS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RoHS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부속서 A에 8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세부품목 목록을 예시로 소개하고 있으며, 적용예외에 관한 일반사항과 앞으로 적용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는 19개 품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가 자사 제품이 RoHS지침 적용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Decision Tree'를 부속서 B에 예시하고 있다.

RoHS 적용과 관련해서 적합성 증명방법과 최대 허용농도기준의 측정단위인 '균질재료'의 명확한 정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규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EU의 각 회원국들 대부분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관망하는 가운데, 영국이 주도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영국정부의 안을 근거로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국쪽 관련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RoHS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 영국 DTI

〈 해외동향 에 이어서〉



일본, 지구온난화 대응키 위해 백색 LED 조명 개발사업 적극 추진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대책 정책사업으로 '백색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적으로 한 '백색 LED를 사용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기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환경성으로부터 위탁 받아 오사카부 환경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마츠시타전공은 지난 10월 20일, 기존의 형광램프 방식과 비교해 약 40~50%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LED 조명 시스템 실현이 가능하며, 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중간 사업성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사무실에서의 에너지절약에 유용한 ▲국부/전반 병용 조명에 적합한 LED 조명기구 개발과 ▲밝기에 방향성 얼룩이 없는 구내 간판용 LED 조명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부/전반 병용 조명(task & ambient

lighting)'이란 천정 조명으로부터의 전반적인 밝기를 줄이는 한편, 작업 조명으로부터 작업공간을 밝히는 방식을 말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07년 3월말까지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보급 전망이 높은 조명기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LED는 전기를 흘리면 발광하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1960~1970년대에 적색, 녹색, 황색의 LED가 개발된 후, 1990년대에 일본의 메이커가 청색 LED 개발에 성공했고, 1996년에 백색 LED가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LED는 신호기나 액정의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에너지절약 성능이 뛰어나고 제품 수명이 길어서 현재는 일반 조명용으로 형광램프를 대체할 조명기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백색 LED가 형광램프를 대체할 경우에는 형광램프로 인한 수은 배출문제 해결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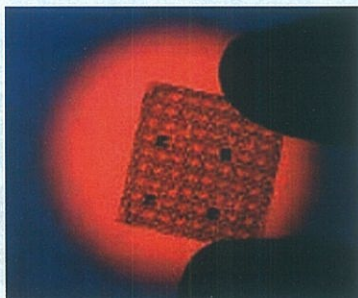
출처 | 일본 환경성, (주)마츠시타 전공 등

EU RoHS 지침 부속서 잇달아 개정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EU 법규인 RoHS 지침 적용예외를 규정하는 부속서에 대한 두차례 개정이 최근 잇달아 이루어졌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간 갈등의 불씨였던 deca-BDE는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Deca-BDE를 RoHS 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Commission Decision 2005/17/EC]이 채택되어, 이 물질 사용에 대한 논란은 일단 일단락 됐다. 얼마 전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번에 EU 집행위가 단독으로 deca-BDE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집행위원회를 그대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관련 산업계는 즉각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이 개정결정에서는 납청동 베어링셸 및 부시(lead-bronze bearing shells & bushes)도 적용 예외 규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베어링셸 및 부시에 납청동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10월 21일자 EU 관보를 통해 또 다른 RoHS 부속서 개정 결정(2005/747/EC)이 공표됐다. 이 결정은 광학유리 및 유리필터에 사용되는 납 및 카드뮴 등 5개 품목의 RoHS 적용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버와 기억장치 등의 솔더링용 납은 2010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그 유예기간 규정을 삭제해 2010년 이후에도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출처 | EU 집행위



캘리포니아주, 화장품안전법 제정

캘리포니아주가 화장품 내의 유해물질 규제를 위한 법규인 화장품안전법(California Safe Cosmetics Act of 2005)을 지난 10월 7일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정·공표했다. 제품 내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노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규는 제품에 포함된 잠재적 유해물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 권한을 주정부 당국에 부여하고 있다.

(※ 본지 제13호(2005년 9월호)에서 이 법규 제안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음. 법규 주요 내용은 관련 기사 참조)

출처 | 캘리포니아 주의회, Intertek Labtest

EU, 소음규제 2단계 대상에서 일부 옥외장비 제외 추진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2단계 옥외장비 소음기준 적용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옥외장비 소음규제지침(2000/14/EC) 개정 지침안[COM (2005) 370 final]에 대해 입법 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져 1차 독회를 거쳐 조만간 채택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강화된 2단계 소음기준 적용에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 기술적으로 기준 만족이 불가능하다는 관련전문가 의견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 8월, 모바일크레인, 그레이더 등을 포함해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단계 기준적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옥외장비 소음규제지침은 건설장비, 정원기계, 쓰레기 수거차 등 도시 내 작업장비를 포괄하여 옥외장비 소음규제를 통합한 지침

으로, 22개 품목군에 대해 규정된 최대 허용 소음기준치를 2002년과 2006년 2단계로 걸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지침에 따라 2002년부터 품목별 1단계 최대허용 소음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출처 | EU 집행위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마크협회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9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국제회의 정보

- ① 10.31. ~ 11.4. 2005 지속가능개발 컨퍼런스 (호주 앨리스스프링스)
- ② 11. 7. ~ 11. 8. 2005년 북경 재생가능에너지 컨퍼런스 (중국 북경)
- ③ 11. 8 ~ 11.12.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 (한국 고양시(KINTEX))
- ④ 11. 8 ~ 11.11. 2005년 국제 재활용 컨퍼런스 (중국 상하이)
- ⑤ 11.21 ~ 11.22. 5회 배출권거래 및 탄소시장 컨퍼런스 (영국 런던)
- ⑥ 11.22 ~ 11.23. 전기전자제품 설계 및 재활용 컨퍼런스 (영국 런던)
- ⑦ 11.24 ~ 11.25.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국제 심포지움 (태국 방콕)
- ⑧ 11.28 ~ 11.29. 제1회 유럽 에너지정책 컨퍼런스 (벨기에 브뤼셀)
- ⑨ 11.29 ~ 11.30. value chain을 통한 제품의 eco-efficiency 및 지속가능성 세미나 (이탈리아 로마)
- ⑩ 12.5. REACH의 효과적 실행방안을 위한 컨퍼런스 (벨기에 브뤼셀)
- ⑪ 12.13 ~ 12.18. 제6차 WTO 각료회의 (중국 홍콩)
- ⑫ 12.15 ~ 12.17. 일본 친환경상품전시회(Eco-Products Japan 2005) (일본 동경)

2005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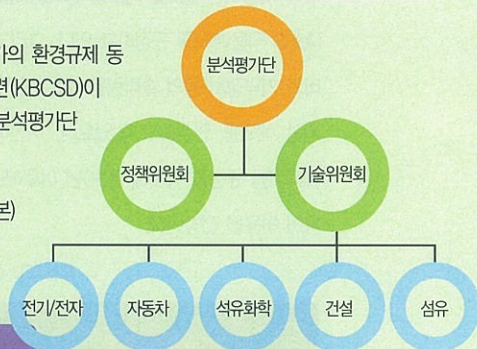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①	2	3	4	5
6	7 ②	8 ③④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⑤	22 ⑥	23	24 ⑦	25	26
27	28 ⑧	29 ⑨	30			

2005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⑩	6
7	8	9	10	11	12	13 ⑪
14	15 ⑫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EN시스템운영체제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

주최 : 친환경상품진흥원 · 환경재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경기도 · MBC
 일시 : 2005.11. 8(화) ~ 12(토)
 장소 :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고양시)
 참가문의 : 02-358-6800(교한136)

제2차 한-EU 환경규제대응 세미나
 「EU 대기환경규제 동향 및 국내 대응전략」

주최 : 환경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KEI, 중소기업청, 친환경상품진흥원
 일시 : 2005.11. 8(화), 09:00~12:30
 장소 : 전경련회관 20층(난초홀)
 참가문의 : 02-2110-6560(환경부 배연진 사무관)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232) | 팩 스 : 02-358-8560 | 이메일 : jung60@koeco.or.kr